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8
----------	------

발의년월일 : 2001. 11. 26.
 발의자 : 박명훈 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증언거부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함.
-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과태료)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⑥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증인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⑦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과 안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되 그 세부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⑧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50 ~ 100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7조(과태료)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u>②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u></p> <p><u>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u>④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⑤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현 행	개 정 안
	<p>⑥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증인의 의견 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과 안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되 그 세부 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⑧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u>제27조(생략)</u>	<u>제28조(현행 제27조와 같음)</u>
<u>제28조(생략)</u>	<u>제29조(현행 제28조와 같음)</u>

타시의회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시의회별 과태료 부과 기준			
	수원시의회	광명시의회	성남시의회	안산시의회(안)
1. 출석요구불응				
가. 출석 요구 불응 2회 이상	500	500	400~500	400~500
나. 출석 요구 불응 1회	400	400	300~400	300~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300	400~500	300~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200	300~400	200~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	100	400~500	100~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50	50	300~400	50~100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18
----------	------

제안년월일 : 2001. 12. 20.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

□ 제안 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위반 행위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였으나, 증언 일부 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소 적다고 판단되어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효율을 기하고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안 제27조 관련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반 행위별 종류 중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의 과태료 “100~200”을 “150~200”으로,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의 과태료 “50~100”을 “100~150”으로 수정함.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의 위반행위별란 중 2. 증언거부의 다. 증언일부거부 2회 이상의 과태료 “100~200”을 “150~200”으로 하고, 라. 증언일부거부 1회의 과태료 “50~100”을 “100~150”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별표】</p> <p>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위 반 행 위 별</th> <th style="width: 50%;">과 태 료</th> </tr> </thead> <tbody> <tr> <td>1. 출석요구 불응</td> <td></td> </tr> <tr> <td>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td> <td>400 ~ 500</td> </tr> <tr> <td> 나. 출석요구 불응 1회</td> <td>300 ~ 400</td> </tr> <tr> <td>2. 증언거부</td> <td></td> </tr> <tr> <td>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td> <td>300 ~ 400</td> </tr> <tr> <td>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td> <td>200 ~ 300</td> </tr> <tr> <td>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td> <td>100 ~ 200</td> </tr> <tr> <td>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td> <td>50 ~ 100</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50 ~ 100	<p>【별표】</p> <p>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위 반 행 위 별</th> <th style="width: 50%;">과 태 료</th> </tr> </thead> <tbody> <tr> <td>1. 출석요구 불응</td> <td></td> </tr> <tr> <td>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td> <td>400 ~ 500</td> </tr> <tr> <td> 나. 출석요구 불응 1회</td> <td>300 ~ 400</td> </tr> <tr> <td>2. 증언거부</td> <td></td> </tr> <tr> <td>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td> <td>300 ~ 400</td> </tr> <tr> <td>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td> <td>200 ~ 300</td> </tr> <tr> <td>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td> <td>150 ~ 200</td> </tr> <tr> <td>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td> <td>100 ~ 150</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50 ~ 100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